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49838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4983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6. 26 선고 2000나10665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A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BA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신CA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BB)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6. 26. 선고 2000나10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KK재단이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원금 15억 원씩으로 정하여 2회에 걸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후 대출 취급할 것이며 시설준공 즉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하여 본보증 전액 해지할 것'으로 기재되고 그 보증약관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고, 소외 법인은 원고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6회에 걸쳐 원금 합계 3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그 소외법인의 사업장부지와 준공시설(준공 당시 합계시가 5,801,570,000원)에 최고액 4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의 특약과 면책조항의 취지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설치한 당해시설에 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워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피고의 보증책임을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원고가 사업장 부지 및 당해 시설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보증책임 전부를 면하게 된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한편 원고가 부담하는 담보취득의무는 피보증인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소 후 피고 의제CB으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 결론이 달리진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원심 판단에는 신용보증서상의 특약과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이나 신의칙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유지담